

참고 2 |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서식

■ 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63호의7서식] <개정 2021. 3. 16.>

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

(앞쪽)

1. 기본사항

① 법인명	(사)신나는사상스포츠클럽	② 사업자등록번호(고유번호)	606-82-12858
③ 대표자 성명	유재우	④ 공익법인등 구분	국내지정기부금단체
⑤ 전자우편주소	ssnsc@naver.com	⑥ 사업연도	2020-12
⑦ 전화번호	051-319-7304	⑧ 공익법인등 지정일	2016-09-30
⑨ 소재지	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196번길 51(학장동)		

2. 기부금의 수입·지출 명세

(단위: 원)

⑩ 월별	⑪ 수입	⑫ 지출	⑬ 잔액	월별	수입	지출	잔액
전기이월	-	-		8월	0	0	0
1월	0	0	0	9월	0	0	0
2월	0	0	0	10월	0	0	0
3월	0	0	0	11월	0	0	0
4월	0	0	0	12월	0	0	0
5월	0	0	0	합계	0	0	0
6월	0	0	0	차기이월	-	-	
7월	0	0	0				

3. 기부금 지출 명세서(국내사업)

(단위: 원)

⑭ 지출월	⑮ 지급목적	⑯ 지급건수	⑰ 대표 지급처명 (단체명/개인)	⑱ 금액
⑲ 연도별	⑳ 지급목적	㉑ 수혜인원	㉒ 대표 지급처명 (단체명/개인)	㉓ 금액
합계				

4. 기부금 지출 명세서(국외사업)

(단위: 원)

㉔ 지출월	㉕ 국가명	㉖ 지급목적	㉗ 지급건수	㉘ 대표 지급처명 (단체명/개인)	㉙ 금액
㉚ 연도별	㉛ 국가명	㉜ 지급목적	㉝ 수혜인원	㉞ 대표 지급처명 (단체명/개인)	㉟ 금액
합계					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.

2021년



제출인:

(사)신나는사상스포츠클럽

(공익법인등의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 또는 동등 이상 80g/㎡]

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

1. 단체 기본사항		사업연도	2020. 01. 01. ~ 2020. 12. 31.	
① 법인(단체)명	(사)신나는사상스포츠클럽	② 사업지등록번호(고유번호)	606-82-12858	
③ 대표자 성명	유재우	④ 공익법인등 지정 및 만료일	지정일 : 2016.9.30 만료일 : 계속	
⑤ 소재지	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196번길 51(학장동)	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	www.ssns.or.kr	

2. 의무이행 여부

	⑨ 의무	⑩ 의무이행 여부	⑪ 점검결과
⑦	가.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(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)	여	
	나.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	여	
	다-1.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,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, 공익위반사항 관리·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을 것	여	
	다-2.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다만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	여	
	라.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「공직선거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	여	
⑧	마.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	여	
	바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	여	
	사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)	여	
	아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)	여	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6항 및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.

제출인 : 2021년 5월 13일
(단, 직인)

귀하

위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6항 및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9조 의2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.

2021년 월 일
(통보기관의 장) [인]

국세청장 귀하

작성방법

1. 이 서식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기목부터 바목까지(마목 제외)의 공익법인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.
2. ④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등은 지정연도의 1월1일부터 6년간만 공익법인 등에 해당됩니다.
- 다만, 2021년 1월 1일 이후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하는 분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(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)을 지정기간으로 합니다.
3. ⑨의 검토 항목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기목의 공익법인만 해당합니다. 다만, ⑨의 검토 항목 중 가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합니다.